

##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 변경 협약서

중소기업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3월 28일 체결한 「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서」의 제6조, 8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고, 변경된 내용은 변경협약서 체결일부터 효력 발휘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다.

다 음

구 분	현 행	개 정
제6조 (이자지원 Program)	① “은행”은 “콘텐츠 중소기업” 지원 시, 대출이자를 우대한다. ② “은행”은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“적용여신금리”에서 1.8%p를 자동감면 하여 특례지원하며, 추천기업의 신용등급, 거래기여도,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.3%p(16.3.25.현재) 추가감면 할 수 있다. ③ 협약 종료 시 자동감면 특례지원은 종료된다. 다만 종료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은 해당 대출 만기일까지(최장 1년) 이자지원이 유지된다.	① “은행”은 “콘텐츠 중소기업” 지원 시, 대출이자를 우대한다. ② “은행”은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추천기업별로 산정한 “적용여신금리”에서 1.8%p를 자동감면 하여 특례지원하며, 추천기업의 신용등급, 거래기여도,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.3%p(17.3.25.현재) 추가감면 할 수 있다. ③ <u>협약 종료 시 자동감면 특례지원은 종료되며 모든 협력기업의 대출 최장 만기일은 본 협약 종료일(17.12.31)과 동일하게 운용한다.</u>
제8조 (협약서의 효력, 변경)	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“기관”, “은행”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(15.3.27)로부터 5년으로 한다. 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. ③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	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“기관”, “은행”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<u>그 종료일은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.</u>  ② (삭제)  ③ 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※ 위 변경내용은 2017. 3. 27부터 적용됨

2017. 4. 14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(인)



중소기업은행

은행장 김도진 (인)

